##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388 제출연월일 : 2024. 9. 27.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통합·폐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의 통합·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정비를 유도하며,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30조 및 별지 신설).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해당 기금을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통합・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17조에서 제29조까지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근거 법률(제3조제4항 관련)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 6. 「식품위생법」 제89조
- 7.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9. 「의료급여법」 제25조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11. 「재해구호법」 제14조
-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제267조제3항 및 제351조제5항
- 13.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 14.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 15.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이 법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
	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u>수 없다. 다만, 교육·과학 및</u>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
	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용
	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
	<u>지 아니하다.</u>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	③
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	
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	
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	
용을 공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 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 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 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u>부장관은 기금(제1</u> 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 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 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금을 폐 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금 과 통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기금의 통합 • 폐지를 위 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치 • 운용) ① -----

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 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 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 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설치하여야 한
다	
② ~ ⑤ (현행3	과 같음)
<u>&lt;삭 제&gt;</u>	

제30조(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 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17조 에서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 외한다)에서 교육 · 과학 및 체 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 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 부장관"으로 각각 본다.